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8호
----------	------

2020. 5. 18.

건명	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세무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5. 8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5. 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[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]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(안 제8조)

- [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] 제도의 신청 자격이 되는 소유 재산 평가

나. 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(안 제9조)

- [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] 제도의 안내, 신청방법, 결과통지 및 기록·관리

다. 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(안 제10조)

- 선정대리인의 임기, 비밀유지 의무, 우대사항 규정.

□ 검토의견

-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3조의2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2조의2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